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신규 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공고하오니 인근 지역 내에 신규 담배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5월 03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담배소매업 폐업처리 내역

연번	상 호	영업소 위치	폐업(처리)일	거리기준
1	씨유 은평역촌초교점	은평구 은평로3길 26, 1층 (역촌동)	2024-05-03	50m

※ 상기 장소가 현행 소매인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이 불가함에 유의

2.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 신청기간 : 2024-05-03 (금) ~ 2024-05-16 (목)

(토, 일, 공휴일 제외/ 접수 시간 : 09:00 ~ 18:00)

○ 신청대상 : 위 장소와 인근 지역 내 담배소매업 희망자

○ 접수처 :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 (본관2층)

○ 제출서류

- 소매인 지정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점포(적법한 건축물에 한함)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신청인이 임차인일 경우)

- 우선지정 대상자의 경우

▷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 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상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위임장, 위임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 및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 『은평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제5조)

- 적법한 건축물인 점포로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가 아닐 것

- 소매인 영업소 간 일정거리(거리기준) 이상 유지 (거리기준 0m일 경우 구내소매인)

- 신청자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 병, 의원, 약국 등 보건의료 영업장과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 『식품위생법』에서의 식품접객업소(단, 식품접객업소와 담배판매업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를 별도의 분리된 공간으로 구분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 가능)

○ **지정방법**

- 신청인에 대하여 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 후 적합 대상자에 한해 지정하되 적합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접수순서와 관계 없음. 접수기간 중 다수 신청여부 비공개)
- 적합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 **공개 추첨으로 지정**

○ **추첨일시**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자에게 추후 통보

○ **추첨장소** : 은평구청 본관 2층 일자리경제과

○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02-351-6913)로 문의. 끝.